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 : 윤호중・홍기원・한병도

김한규 · 정성호 · 이병진

조승래 • 용혜인 • 강득구

이학영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·수사·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·소송 등에서 진술·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(이하 "공익신고자등"이라 함)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 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참고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 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 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, 공 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제1 항). 법률 제 호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전단 중 "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"을 "신변에 불안이 있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신변보호조치) ① 공익신	제13조(신변보호조치) ①
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	
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<u>생명·</u>	<u>신변에</u>
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	불안이 있는
<u>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</u> 경우에	
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	
한 조치(이하"신변보호조치"라	<u>,</u>
한다)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	
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	
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	
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	
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